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 11. 6 선고 2018가단150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전 문

원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1. A

2. B

변론 종결무변론

판결 선고2018. 11. 6.

주 문

1. C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3. 6. 17. 접수 제634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3. 7. 22. 접수 제79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판사정희철

별지